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 개정(안)

농림부

1. 제안이유

2000년 이후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가축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다발하고 있고 국내에도 유입되어 큰 피해를 준 바 있으며, 최근에는 소 부루세라병, 돼지 만성소모성질병 등 국내 상제질병으로 인해 농가피해가 많은 실정이다. 따라서 철저한 가축방역대책 수립은 물론 이를 뒷받침할 법령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우선 시급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법 조항을 개정코자 한다.

2. 주요 내용

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면서도 사람의 질병과 명칭이 비슷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일부 가축질병의 명칭을 변경하고 법정가축전염병중 제2종 일부를 제3종으로 전환하여 농가 자율방역을 유도하고자 함(안 제2조).

나.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정책의 자문을 위하여 농림부장관 소속기관 소속하에 중앙가축방역협의회를 두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지방가축방역협의회도 두도록 함(안 제4조).

다. 가축방역관이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

여 취하는 조치를 혈청검사, 역학조사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조사 3일전까지 조사일시 조사내용 등을 통지토록 함(안 제7조).

라. 죽거나 병든가축의 신고시 신고 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11조).

마. 질병진단 등 병성감정을 의뢰한 경우가 아니라도 가축방역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질병진단을 실시하게 하고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에 대해 하자가 있을 경우 지정취소도 가능토록 함(안 제12조).

바. 농장 등에서 불법적으로 혈청요법을 실시함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혈청요법 방안을 법제화하고, 가축방역의 공동실시명령을 현행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도 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감 있는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사. 가축을 이동할 때 검사 명령서를 휴대하도록 하는 명령권한이 현행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서 되어 있어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시장·군수·구청장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3항).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 개정(안)

아. 농장 또는 마을단위 가축질병관리수준에 대한 등급 부여를 현행 농림부장관에서 시도지사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도 지방자치단체도 부담토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방역에 대한 책임의식을 부여함(안 제18조).

자. 가축의 살처분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을 해소하기 위해 강제폐기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48조, 제49조).

차. 제1종가축전염병과 같이 제2종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판정된 장소를 중심으로 일정한 범위를 정한 지역안으로 들어오는 다른 지역의 사람, 가축 또는 차량에 대하여 교통차단, 출입통제 또는 소독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가축질병의 확산을 방지코자 함(안 제28조).

카. 제3종가축전염병에 대한 검사, 이동제한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함(안 제28조의 2).

타. 농림부장관이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 지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지정검역물의 수입으로 인하여 동물의 전염성질병의 유입가능성에 대한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파. 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하여 현행 반송, 소각 또는 매몰만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그밖의 안전한 처리 방안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하. 우편으로 지정검역물 수입시 수입자가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검역신청 하던 것을 우체국장

이 동물검역기관장에게 통지토록 함(안 제39조).

거. 검역시행장 지정대상기간시설기준운영 규정을 농림부령에서 정하도록 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검역시행장에서 불법행위 등 하자가 있을 경우 지정취소를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40조, 제42조의2).

너. 농림부령에서 규정한 검역물 사양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과 지정검역물의 운송차량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에 두어 명확화 함(안 제43조).

더. 검역관이 검역을 실시하는 중에 검역물의 불합격품에 대해 소각매몰 또는 그밖의 안전한 처리방법으로 처리토록 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불합격의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44조).

러. 가축의 살처분 등에 대한 보상금을 국가만 지급하여 왔으나 지방자치단체도 일부 부담토록 하여 보상금의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책임감을 고취토록 함(안 제48조).

머. 해외여행객이 지정검역물을 단순 휴대품으로 반입시 미신고한 사항에 대해 현행 형벌인 범칙금을 과태료로 완화함(안 제57조제5호 및 제60조제3호, 제61조 내지 제64조).

버. 농가 등에서 방역규정을 위반 또는 회피로 제1종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의 원인을 제공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1조의2). 